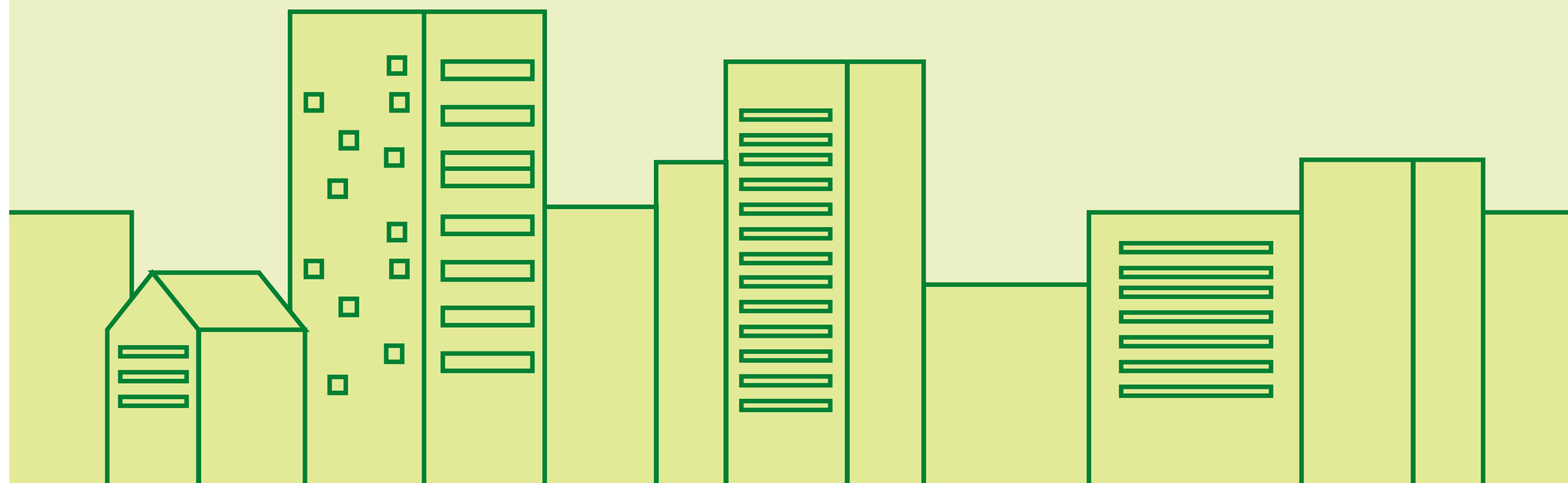


일용근로자,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?!

“실시간 소득파악”

제도를 확인하세요!



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?

사업자, 비영리단체, 국가기관 등이
일용근로자,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
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입니다.

소득자료 제출의무자

- * 일용·상용근로자,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,
강연·고문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자에 **대가를 지급한 자**
- *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**사업장을 제공**하거나
용역을 알선·중개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.



미제출·허위제출 시 발생 불이익

※ 미제출 등 가산세 (소득법§81의 11, 법인법§75의 7)

소득자료		미제출(지연제출)	불분명* 제출
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		지급액 X 0.25% (1개월 이내, 0.125%)	지급액 X 0.25%
간이지급 명세서	거주자의 사업소득		
	거주자의 기타소득		
	근로소득	지급액 X 0.25% (3개월 이내, 0.125%)	

* 인적사항, 지급액 등 미기재 또는 오류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※ 미제출 등 과태료 (소득법§173, 소득법§177)

소득자료	전부 미제출	일부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
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	건별 20만 원	건별 10만 원

*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이 있는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**과태료 부과**

성실 제출시 세액공제 혜택

적용대상 소득자료	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(※그 외 소득자료 적용대상 X)
적용요건	제출기한 내에 전자제출 (홈택스·손택스)
적용기간	'21. 11. 11. ~ '26. 12. 31.
공제금액	용역 제공자 수 X 500원 ('24. 12. 31. 제출 분까지 300원) ▶ 연간 최대 200만 원, 최소 1만 원

소득자료 제출방법



홈택스(PC)



손택스(모바일)



우편·방문 제출

제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세요!